

#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 2019년 4월 12일
- 발 의 자 : 강민구·강성환·김성태·김혜정·이만규·이진련·장상수·하병문
- 회부일자 : 2019년 4월 16일

## 2. 주요내용

-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구매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결과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 의무와 구매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 안 제10조).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공공기관의 협조,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15조).

### 3. 검토의견

#### ○ 이 제정조례안은

- ▶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 먼저,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 ▶ 사회적경제는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 공동체 경제주체들의 생산,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sup>3)</sup>으로서 우리사회의 고용불안·양극화 등의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해결할 대안경제로 부각되고 있음.
-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분류하여 개별 법령과 조례<sup>4)</sup>에서 각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의 포괄적 지원을 위해 현재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음.

〈대구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2018. 12월말 기준)〉

3)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정의)

4) 관련 규정

①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② 조례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단위 : 개)

합 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계	인증				예비
931	123	68	55	659	82	67

### ○ 다음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 이 제정조례안은 1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안 제1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 등의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음.
-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나열하였음.
- ▶ 안 제3조와 안 제4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조례의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 ▶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구매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구매계획의 공고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구매실적 관리를 위한 구매결과 작성의무도 부여하고 있음.

이는, 대구시가 이미 매년 사회적기업 제품의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구매목표와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사회경제기업 제품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제도에 반영한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공구매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의무와 구매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활성화를 촉진토록 하였음.

현재 대구시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총 구매물품 중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비율이 2017년에는 6.40%, 2018년에는 7.21% (예비사회적기업 포함)로,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5)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총 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를 상회하는 수준임.

조례안에서 구매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해당 기업들의 판매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구매 대상자 선정 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선정과정이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8조(우선구매 의무)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 ▶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제품의 정보제공,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구매촉진 교육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판로지원 대상으로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단체, 기업 등을 포함한 것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판매 증가, 매출액 향상과 함께 향후 민간영역까지 판로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사회적 경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것으로 보임.

###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이번 제정안 제출은 최근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요인이 증폭되고 있어 포용적인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의 필요성 인식과 지원확대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및 판로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타 시·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련 조례제정 현황

: 5개(서울, 광주, 인천, 전남, 충남)

-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